

# 항공전자연구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95.9.1		16		
2	2001.9.1		17		
3	2006.7.1		18		
4	2012.8.24		19		
5	2016.8.1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항공전자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전자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소는 항공우주 관련 전자 통신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항공 및 우주 관련 전자 통신 전 분야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- ② 동 분야의 기술개발
- ③ 동 분야의 연구자료집, 도서, 연구지, 소식지 발간<개정 2012.8.24>
- ④ 동 분야의 연구발표회
- ⑤ 동 분야의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연구 등의 수행
- ⑥ 타 기관과의 협력,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
- ⑦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** (임원 및 임무) ①본 연구소에 소장 1인, 부소장 1인, 운영부장 1인, 간사 1인 이상 및 감사 1인을 둔다.

- ② 소장은 본 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한다.
-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괄한다.
- ④ 부소장, 운영부장 및 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부소장은 소장 부재 시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, 대내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 운영부장은 연구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간사는 연구소 행정처리 및 실무사항을 수행한다.
- ⑧ 감사는 회계 연도말에 본 연구소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[조문개정 2012.8.24.]>

**제5조** (조직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지원실 및 정책연구실과 3개의 연구부를 둔다.

- ② 연구지원실 및 정책연구실의 운영은 운영부장이 담당한다.
- ③ 본 연구소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다음의 세 연구부를 둔다.
  - 1.항공전자연구부

2. 전파기술연구부

3. 기반기술연구부

④ 각 연구부장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장이 시행한다.

⑤ 각 연구부에는 관련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
⑥ 연구지원실은 연구소 운영관리의 세부사안을 수행한다.

⑦ 정책연구실은 연구소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[조문개정 2012.8.24.]

**제6조** (연구원) 본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원, 특별연구원을 두고 필요시 소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
3. 연구원은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한다.<개정 2016.8.1>

4. 연구조원은 본 대학교에 학사과정 이상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
<개정 2016.8.1>

5. 특별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** (행정요원) 연구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며, 소장이 임명한다.[조문개정 2012.8.24.]

### 제 3 장 운 영<개정 2012.8.24>

**제8조** (자문위원) <삭제 2012.8.24.>

**제8조의 2** (위원회)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.

**제9조**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,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12.8.24>

**제10조** 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장, 부소장, 운영부장, 연구부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, 9명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2.8.24>

**제11조**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- ② 연구과제의 선정
- ③ 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- ④ 본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⑤ 기타 본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 사항

**제12조**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의2** (상임운영위원회) 소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는 상임운영위원회를 6명 이내로 구성하며,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
[신설 2012.8.24.]

**제12조의3** (자문위원) ① 연구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, 연구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내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고 본 연구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.

[신설 2012.8.24.]

### 제 4 장 재 정 <개정 2012.8.24>

**제13조**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소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** 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5조** (연구비지급 및 관리)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**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 5 장 기 타 <개정 2012.8.24>

**제17조** (시행세칙)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8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